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 장 자 : 홍승희 부연구위원(범죄피해자연구센터)

2. 출장기간: 2007년 9월 14일(금) ~ 2007년 9월 18일 (4박 5일)

3. 출장지역: 일본

4. 출장목적:

- ◎ “불건전정보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일본의 불건전정보 관련 신종범죄의 규제법률 및 시스템에 대한 일본의 실태파악을 위한 면담 및 문헌수집

5. 출장내용:

-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인터넷범죄에 대한 규제법규가 마련되기 이전에 컴퓨터범죄에 대한 규제가 1987년 개정된 일본 형법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개정형법은 컴퓨터범죄에 대응하는 법규일 뿐, 인터넷망이 보급된 현 시점에서 컴퓨터네트워크 및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으로써 오프라인중심의 몇몇 개별 법규에서 온라인 관련 행위를 포섭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범죄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 ◎ 먼저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인터넷 불건전정보와 관련하여 1999년 5월 26일 제정된 일본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동법은 오프라인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7조의 아동포르노반포죄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반포, 판매, 업으로서 대여 또는 공연히 전시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두고 해석에 있어

서 대립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 행위의 객체를 ‘사진, 비디오 테이프 및 기타 물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 물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게재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기타 물건’의 해석에서 ‘인터넷상의 음란동영상’을 포함하는가는 일본형법 제175조(음란물유포)의 해석에서 먼저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일본의 하급심판례 및 다수설에서는 이를 긍정하여, 비록 정보 자체는 물건이 아니지만, 그러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드라이브 또는 이러한 정보가 설치된 컴퓨터가 음란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 ◎ 스팸메일과 관련하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즉 기존 특정상거래법(特定商取引法)을 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특정상거래법’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특정전자메일의송신적정화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즉 컴퓨터 뿐만 아니라 휴대폰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신되는 상업광고에 대해 행정조치를 명령했을 경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대응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 ◎ 와세다 대학 법무연구과 초빙연구원, 이승환박사 면담 및

와세다대학 법학대학원 및 도서관 방문

- 일본의 불건전정보 이용 현황과 관련 자료 수집에 대한 도움 받음

: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가정, 회사, 학교 등을 제외한 외부에서 인터넷접속은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라 한다. 실제로 변화한 거리에서도 ‘pc방’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pc방 등을 통한 외부의 인터넷 접속환경이 우리보다 손쉽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각종 신종범죄가 마찬가지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채팅과 만남주선 게시판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가 2002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인터넷이용이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접속이 활발함으로써 휴대폰으로 인터넷 데아이(만남)계 사이트를 접속하여,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등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로 까지도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 불건전정보의 유포에 대한 일본의 자정적 대응시스템에 대한 자문

: 일본은 1996년부터 인터넷사업자협의회가 주도로 하고 있는 제3자 필터링시스템을 통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즉 재단법인인 인터넷협회에서 인터넷내용선별기술표준을 이용한 제3자 필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을 1999년에 시행하여, 동법률에서는 성인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음란물유통방지를 위한 정화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999년에 제정된 아동포르노금지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외설물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일본통상성에서는 비영리시민단체들과 인터넷 관련 업계가 결성한 전자네트워크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본은 업계의 자정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